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2. 9 선고 2020가단1380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1. 12

판결 선고 2021. 2. 9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,733,922원 및 위 금원 중 2,191,319원에 대하여 2020. 7. 23.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 주식회사는 2015 . 5. 29. 피고에게 3, 500, 000원을 변제기 2015 . 11. 16., 이율 및연체이율 각 연 36.5%로 정하여 대여(이하 '이 사건 대여금'이라 한다)하였다.

나. 피고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,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고,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.

다. D 주식회사는 2018. 10. 26.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,피고에 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.

라. 피고가 연체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2020. 7. 22.기준으로 원금 2,191,319원 및 이자 4,542,603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제7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6,733,922원(= 2,191,319원 + 4,542,603원) 및 위 금원 중 원금2,191,319원에 대하여 2020. 7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전경훈